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나4057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관리회

청주시

송달장소 청주시

대표자 〇〇〇

피고, 항소인 ○○○

청주시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1. 7. 5. 선고 2010가소5560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8.

판 결 선 고 2012. 10. 9.

주 문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747,876원 및 그 중 157,272원에 대하여는 2011. 7. 6.부터, 590,604원에 대하여는 2012. 1. 5.부터 각 2012. 10.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1원 및 그 중 560,442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1,309,559원에 대하여는 2012. 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9 내지 22, 30, 38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주시 ○○구 ○○동 ○○○○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30개의 전유부분(면적 합계 5997.6㎡)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자는 25명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호의 세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부터 2011. 12.까지 피고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합계 1,870,001원의 관리비(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를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기간	관리비(원)
2010. 4.~5.	91,113
2010. 6.	54,092
2010. 7.	59,673
2010. 8.	73,744
2010. 9.	104,724
2010. 10.	63,324
2010. 11.	109,601
2010. 12.	66,965
2011. 1.	123,829
2011. 2.	97,086
2011. 3.	61,400
2011. 4.	57,860
2011. 5.	97,362
2011. 6.	102,139
2011. 7.	99,354
2011. 8.~9.	149,207
2011. 10.	222,563
2011. 11.	94,174
2011. 12.	141,791
합계	1,870,001

다. 원고의 대표자 ○○○은 2010. 5. 10.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2. 7. 10.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재선임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재선임한

2010. 5. 10.자 및 2012. 7. 10.자 관리단집회는 모두 적법한 소집절차 및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관리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선임)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

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다.

다. 판단

(1) 판단의 기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참조). 그리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2) 2010. 5. 10. 관리단집회의 효력

2010. 5. 10. 개최된 관리단집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이 적법한 결의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2012. 7. 10. 관리단집회의 효력
- (가) 갑 제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호, 전유면 적 59.92㎡), ***(○○○호, 전유면적 61.72㎡), ***(○○○호, 전유면적 115.86㎡), ***(○○○·○○호, 전유면적 158.43㎡), ***(○○○·○○호, 전유면적 합계 491.75㎡), ***(○○○호, 전유면적 173.25㎡), ***(○○○·○○호, 전유면적 합계 686.21㎡), ***(○○○호, 전유면적 216.78㎡), ***(○○○호, 전유면적 256.48㎡), ***(○○○·○○호, 전유면적 합계 390.03㎡), ***(○○○호, 전유면적 297.91㎡), ***(○○○호, 전유면적 252.52㎡), ***(○○○호, 전유면적 170.95㎡)은 서면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다.

- 3) 2012. 7. 10. 개최된 관리단집회에는 ○○○ 외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자인 ***, ***, ***이 참석하여, ○○○으로 하여금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하였고, ○○○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5명(전유면적 합계 3,674.85㎡)의 찬성으로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회의를 마쳤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7. 10.자 관리단집회는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1/5 이상(6명/25명) 및 의결권의 1/5 이상(2043.48㎡/5997.6㎡)의 동의를 받아 소집되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13명/25명) 및 의결권의 과반수(3331.81㎡ /5997.6㎡)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대표자인 ○○○○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1.870.0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피고의 주장 요지
-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청주시로부터 부과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과다하게 이를 부과하였고, ②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원 송달료나 사무용품 구입비를 관리비에 포함시키고, 자신의 관리인 자격을 다투는 입점주들에 대하여는 청소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으며,

③ 소방정기검사비로 2010. 10. 787,767원을 부과하고서도 2010. 12. 또 다시 605,000 원을 부당하게 부과하였고, ④ 입점주들과 상의도 없이 과다한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 로, 피고에 대한 관리비 가운데 수도요금 중 110,000원, 전기요금 중 100,000원, 공사 비 중 100,000원, 청소비 중 50,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중 30,000원은 감액되어야 한 다.

(나) 피고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 합계 1,211,75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비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부분

갑 제11, 23 내지 25, 30호증,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4.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청주시로부터 부과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원고가 입점주들에게 부과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그 사이의 차액, 피고에 대한 개별 부과액, 위 차액에 대한 피고 부과부분 상당액1)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가) 전기요금

기간	한국전력공사 고지액	전체 부과액	차액	피고 부과액	차액
2010. 4.	655,420	1,175,939	11,979	43,694	445
2010. 5.	508,540	1,175,959	11,979	45,034	440
2010. 6.	632,460	632,160	-300	23,405	-11
2010. 7.	767,870	767,870	0	29,146	0
2010. 8.	968,290	968,290	0	36,733	0
2010. 9.	907,470	907,470	0	34,432	0

¹⁾ 전체 차액 × (피고 부과액 / 전체 부과액)

2010. 10.	662,170	662,170	0	24,651	0
2010. 11.	650,190	650,190	0	35,169	0
2010. 12.	943,680	1,027,150	83,470	37,429	3,041
2011. 1.	1,005,570	1,032,470	26,900	38,072	991
2011. 2.	1,010,890	1,005,570	-5,320	36,610	-193
2011. 3.	836,500	836,500	0	29,952	0
2011. 4.	739,410	739,410	0	27,719	0
2011. 5.	604,320	604,320	0	22,512	0
2011. 6.	814,830	814,830	0	30,190	0
2011. 7.	811,580	811,580	0	30,028	0
2011. 8.	678,310	1,816,190	0	67 516	0
2011. 9.	1,137,880	1,010,190	U	67,516	U
2011. 10.	673,900	673,900	0	24,882	0
2011. 11.	776,350	776,350	0	28,759	0
2011. 12.	922,860	922,860	0	34,268	0
	합계			635,167	4,273

나) 수도요금

기간	청주시 고지액	전체 부과액	차액	피고 부과액	차액
2010. 4.	647,310	1,391,390	0	47,419	0
2010. 5.	744,080	1,001,000	U	41,415	U
2010. 6.	638,390	619,810	-18,580	13,375	-400
2010. 7.	694,950	674,720	-20,230	14,824	-444
2010. 8.	842,120	779,080	-63,040	21,308	-1,724
2010. 9.	802,430	802,430	0	21,995	0
2010. 10.	957,840	929,950	-27,890	22,970	-688
2010. 11.	623,510	651,400	27,890	24,336	1,041
2010. 12.	663,160	663,160	0	26,062	0
2011. 1.	645,820	957,840	312,020	40,727	13,266
2011. 2.	605,360	605,360	0	15,310	0
2011. 3.	569,930	645,820	75,890	15,745	1,850
2011. 4.	555,040	605,360	50,320	14,438	1,200
2011. 5.	610,890	623,510	12,620	14,185	287
2011. 6.	663,160	772,355	109,195	18,428	2,605
2011. 7.	749,860	957,840	207,980	18,764	4,074
2011. 8.	868,960	1 561 020	0	21.002	0
2011. 9.	692,060	1,561,020	0	31,002	0
2011. 10.	567,790	567,790	0	11,997	0
2011. 11.	593,800	593,800	0	17,968	0
2011. 12.	567,790	567,790	0	16,114	0
	합계			406,967	21,067

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 중 전기요금 초과부과액 4,273원, 수도요금 초과부과액 21,067원은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법원 송달료, 사무재료비, 청소비 부분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부터 2011. 12. 까지 피고에게 부과한 사무재료비(청소용품, 화장지, 복사비, 잉크, 종이 등)와 청소비는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관리비의 각 항목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는 사무재료비가 구체적으로 지출된 내역 및 청소비가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반면, 갑 제14, 28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 주식회사 ○○○환경, 원고와 다른 몇몇 입점주들 사이에 관리비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진 사실, 원고가 고용한 청소부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무재료비와 청소비를 모두 정당한 관리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부과된 사무재료비 합계액 67,777원 중 피고가 자인하는 37,777원(= 67,777원 - 30,000원), 청소비 합계액 206,256원 중 피고가 자인하는 156,256원(= 206,256원 - 50,000원)만 인정하기로 한다.

기간	사무지	재료비	청소비		
기신 	전체 부과액	피고 부과액	전체 부과액	피고 부과액	
2010. 4.~5.	0	0	0	0	
2010. 6.	0	0	0	0	
2010. 7.	0	0	0	0	
2010. 8.	0	0	0	0	
2010. 9.	0	0	0	0	
2010. 10.	0	0	0	0	
2010. 11.	375,690	12,522	0	0	

2010. 12.	0	0	0	0
2011. 1.	0	0	0	0
2011. 2.	0	0	0	0
2011. 3.	0	0	0	0
2011. 4.	0	0	0	0
2011. 5.	481,300	16,042	800,000	28,920
2011. 6.	266,980	8,898	800,000	28,920
2011. 7.	178,200	5,939	800,000	28,920
2011. 8.~9.	182,000	6,066	800,000	28,920
2011. 10.	120,100	4,141	800,000	30,192
2011. 11.	45,000	1,552	800,000	30,192
2011. 12.	365,930	12,617	800,000	30,192
합 계	2,015,200	67,777	5,600,000	206,256
2011. 10. 2011. 11. 2011. 12.	120,100 45,000 365,930	4,141 1,552 12,617	800,000 800,000 800,000	30,192 30,192 30,192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방정기검사비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관리비 중 소방정기검사비 명목으로 2010. 10. 787,767원, 2010. 12. 605,000원을 포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제26호증, 갑 제30호증의 5,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전기정기검사비로 787,767원을 지출하였으면서도 이를 소방정기검사비라 잘못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사비 부분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 2011. 2. 473,000원, 2011. 3. 815,030원, 2011. 10. 3,638,500원, 2011. 12. 250,000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1. 1.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에 관한 결의와 관리비 정산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기타 항목에 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05호에 관하여 2012. 8. 8. 한 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862,110원을, 2012. 8. 10. 청주시에 수도요금 349,64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비 중 피고가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전기 요금은 630,894원(= 635,167원 - 4,273원)이고, 수도요금은 385,900원(= 406,967원 -21,067원)이므로, 피고는 이들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 중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판단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비 중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747,876원이 됨을 알 수 있다.

기간	보리다 하기비	정산내역				정산 후 금액
기선 	부과된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사무재료비	청소비	경선 추 급력
2010. 4.~5.	91,113	-43,694	-47,419	0	0	0
2010. 6.	54,092	-23,405	-13,375	0	0	17,312
2010. 7.	59,673	-29,146	-14,824	0	0	15,703
2010. 8.	73,744	-36,733	-21,308	0	0	15,703
2010. 9.	104,724	-34,432	-21,995	0	0	48,297
2010. 10.	63,324	-24,651	-22,970	0	0	15,703
2010. 11.	109,601	-35,169	-24,336	-5,5422)	0	44,554
2010. 12.	66,965	-37,429	-26,062	0	0	3,474
2011. 1.	123,829	-38,072	-40,727	0	0	45,030
2011. 2.	97,086	-36,610	-15,310	0	0	45,166
2011. 3.	61,400	-29,952	-15,745	0	0	15,703
2011. 4.	57,860	-27,719	-14,438	0	0	15,703

2011. 5.	97,362	-22,512	-14,185	-7,100	-7,0103)	46,555
2011. 6.	102,139	-30,190	-18,428	-3,938	-7,010	42,573
2011. 7.	99,354	-30,028	-18,764	-2,628	-7,010	40,924
2011. 8.~9.	149,207	-67,516	-31,002	-2,684	-7,010	40,995
2011. 10.	222,563	-24,882	-11,997	-1,832	-7,319	176,533
2011. 11.	94,174	-28,759	-17,968	-686	-7,319	39,442
2011. 12.	141,791	-34,268	-16,114	-5,584	-7,319	78,506
합계	1,870,001					747,876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47,876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57,272원 (= 17,312원 + 15,703원 + 15,703원 + 48,297원 + 15,703원 + 44,554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1. 7. 6.부터, 590,604원(= 747,876원 - 157,272원)에 대하여는 2012. 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10.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2) 12.522}원 × 30.000원 / 67.777원, 이하의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함.

^{3) 28,920}원 × 50,000원 / 206,256원, 이하의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함.

판사 김수정

판사 박정진